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임대주택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